

인천지방법원

매각물건명세서

사건	2024타경584936 부동산강제경매			매각 물건번호	1	작성 일자	2025. 10. 31.	담임법관 (사법보좌관)	신기복	<u>전자서명완료</u>
부동산 및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의 표시		별지 기재와 같음		최선순위 설정	2018.9.28.근저당권		배당요구종기	2025. 4. 1.		
부동산의 점유자와 점유의 권원, 점유할 수 있는 기간, 차임 또는 보증금에 관한 관계인의 진술 및 임차인이 있는 경우 배당요구 여부와 그 일자, 전입신고일자 또는 사업자등록신청일자와 확정일자의 유무와 그 일자										
점유자 성명	점유 부분	정보출처 구분	점유의 권원	임대차기간 (점유기간)	보증금	차임	전입신고일자· 외국인등록(체 류지변경신고) 일자·사업자등 등록 신청일자	확정일자	배당 요구여부 (배당요구일자)	
인천도 시공사	35.26㎡ 전부	등기사항전 부증명서	조사된 내용없음 임차권자	2018.5.16.~ 현재까지	65,000,000		2018.5.16.	2018.5.16.		
<p><비고></p> <p>※ 최선순위 설정일자보다 대항요건을 먼저 갖춘 주택·상가건물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은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경우가 발생 할 수 있고,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는 주택·상가건물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보증금 전액에 관하여 배당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당받지 못한 잔액이 매수인에게 인수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</p> <p>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 매각으로 그 효력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것</p> <p>매각에 따라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의 개요</p> <p>비고란</p>										

※1: 매각목적물에서 제외되는 미등기건물 등이 있을 경우에는 그 취지를 명확히 기재한다.

2: 매각으로 소멸되는 가등기담보권, 가압류, 전세권의 등기일자가 최선순위 저당권등기일자보다 빠른 경우에는 그 등기일자를 기재한다.

부동산의 표시

2024타경584936

[물건 1]

1. 1동의 건물의 표시

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송의동 72-10

광명빌라

[도로명주소]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인로78번길 21

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4층

다세대주택

1층 131.54㎡

2층 131.54㎡

3층 131.54㎡

4층 131.54㎡

지층 131.54㎡

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

2층203호

철근콘크리트조

35.26㎡

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

토지의 표시 : 1.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송의동 72-10

대 288㎡

대지권의종류 : 1. 소유권

대지권의비율 : 1. 288분의 17.59

감정평가액

85,000,000

회차

기 일

최저매각가격

매수신청보증금

1회

2025.11.26

85,000,000

8,500,000

2회

2026.01.07

59,500,000

5,950,000

3회

2026.02.10

41,650,000

4,165,000

4회

2026.03.25

29,155,000

2,915,500